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06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 박해철 · 김주영 · 권향엽

이광희 • 이용우 • 박지혜

박홍배 · 송재봉 · 송옥주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 다는 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매년 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100여건 에 이르는 등 위법한 가설 건축물 등을 숙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개선 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여건 향상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2조의3(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
	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u>다.</u>